

한국의 경제통합 정책에 대한 고찰

정 홍 열

A Review of the Integration Policies of Korean Economy : Problems Progress, and Reforms

Hong-Yul Jeong

Abstract

By the mid-90s, Korea had preferred the multilateral trade framework over regionalism not only because it was considered to be the best way to achieve the over-all national growth but also due to the domestic opposition to the market opening from the less competitive areas such as the agricultural sector.

After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NAFTA in 1994, however, the regionalism became another paradigm for the world trading system as one of the most dominant trends in the recent world economy. This tendency has soon spread to the Asian region and led China, Japan, Singapore, and ASEAN to sign FTA with one another.

In line with this increasing trend towar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Korean government changed its past position oriented toward multi-lateralism against regionalism, and started to seek the establishment of FTA with other countri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signed bilateral FTAs with Chile, Singapore, EFTA, and the US, and are currently undergoing numerous FTA negotiations including Korea- EU FTA, Korea- Japan FTA, and Korea-Canada FTA.

In this paper, I first examine the detailed reasons why Korean government has altered its attitude toward regionalism. Then I review the progress and the main contents of existing FTA agreements. In the conclusion, I will discuss the main problems of the current FTA agreements,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reform.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1. 서론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동맹(CU), 공동시장(CM) 등의 경제통합체를 형성하며 회원국들 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시장을 통합해 왔다. 이러한 지역 통합 추세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출범으로 세계 무역체제를 다자 체제로 설정한 가운데에서도 특정 국가들 간의 경제 통합은 계속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그 동안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지역적 통합주의를 반대하던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를 출범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지역 통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경제통합체들이 출범하고, 그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기존의 경제통합체들도 새롭게 활기를 띄고 활동을 시작했다. 세계의 경제 통합 흐름에 무관심했던 한국도 이러한 경제 통합체 결성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2002년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경제통합 결성에 발을 내디뎠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달리 경제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간의 FTA 협상과정과 협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그리고 결론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FTA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같이 찾아 본다.

2. 우리나라의 FTA 정책 기조의 변화

우리나라는 전후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였고, 또 그러한 다자주의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써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는 향후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도 교역의 지속적 확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의 세계 경제의 추세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결성을 통한 지역 통합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더 확산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언급하였듯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즉, 19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 결과에 따른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의 역외국가로서의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대외경제에 의존도가 심한 국가의 경우 주요시장이 다른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FTA 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둘째, 보다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했다.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는 무역과 투자 패턴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기업의 경영 및 생산 활동에 미치는 경쟁 심화를 통해 촉발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들도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정책수단으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FTA를 통해 국내기업들이 선진 국가 기업들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첨단 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구조의 고도화도 꾀할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 내 FTA 확산 추세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을 때 이러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통상정책의 다층화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아시아내에 쌍무적·다자적 FTA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일환으로 2002년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동반자협정(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을 체결했고, 같은 해 ASEAN과 자유무역을 체결한다는 포괄적 경제협력안 (CEP: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Plan)을 제시했다. 중국도 2001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던 ASEAN + 3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 FTA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대국의 시장에 투자 보장이 강화됨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고, FTA 체결 상대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아 주변 국가들의 시장에도 접근을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FTA 체결과 협정내용

한국은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현재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 상품협정 발효)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07.4)하였으며, EU, ASEAN,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FTA를 체결한 국가나 경제통합체들을 중심으로 그 협정내용을 살펴본다.

3.1 한·칠레 FTA

칠레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좁고 긴 형태를 띤 국가로 국토면적은 756,626 km²로 한반도의 3.5배에 이르고, 2007년 GDP가 2천 3백억 달러(PPP 기준)로 세계 44위를 차지했으며, 1인당 GDP는 13,921달러(PPP 기준)로 세계 79위이다.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 선진국이나 거대 경제권의 국가들이 앞다투어 교역을 희망하여 현재까지 총 3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그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다. 칠레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 대상국으로 선택된 이유는 칠레가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위주의 수출구조와 제조업 위주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보완적이고, 지리적으로 지구 정반대에 위치하여 계절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민감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당시 컴퓨터,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1위 국가이면서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IT산업이 진출하기

유망한 시장이고, 칠레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배후시장인 미주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지역 거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더불어 한국으로서는 칠레의 지금까지 FTA 체험경험을 흡수 할 수 있다는 점들도 폭넓게 참작되었다.

따라서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약 4년 동안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각 각 4월과 6월에 개최된 고위 작업반 회의 이후, 양국과 체네바를 오가며 총 6회에 걸친 협상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결국 2002년 10월 25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고, 국회의 통과를 거쳐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상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이 제시한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칠레의 반발이었다. 한국은 농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농산물 중 377개의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배추, 토마도, 냉장 닭고기, 버섯 등은 5년 내에 관세를 제거하고, 키위, 돼지고기, 냉동마늘, 견과류 등에 대해서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며, 쇠고기, 사과, 배에 대해서는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이후로 협상을 미루고, 포도와 복숭아는 계절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총 1,432개 품목 중에 15.5%인 222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37.7%인 539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를 제거하며, 나머지 품목은 10년의 관세유예기간을 두거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로 미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양허안에 대해 칠레는 반발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협상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타이어, 냉장고, 세탁기 등 257개 품목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과세를 내리자는 안을 포함시켜 공산품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한국의 의도를 꺾으려 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협상이 중단과 개제를 반복하게 되었고, 2001년 열릴 예정이던 5차 협상이 연기되고 그 후 1년 동안 협상이 표류하다가 2002년 8월 개재된 5차 협상, 같은 해 10월 6차 협상에서 양국 간의 의견차가 마침내 거의 해소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입장 차이가 컸던 칠레산 농산물 (쌀, 사과, 배)과 한국의 세탁기, 냉장고를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고, 다른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되었다. 마지막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시장 개방 문제는 FTA 발효 후 4년 후에 재협의토록 함으로써 협상이 종료되었다.

그 후 2004년 4월 1일부로 정식으로 발효 된 한-칠레 FTA는 총 전문과 본문 21장 215조, 그리고 부속서로 이루어졌는데,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양허권 및

시장 접근,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긴급수입 제한조치,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표준관련 조치, 투자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정, 무역 규범, 지적 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합의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공산품 중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 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의 경우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었다. 칠레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과, 배,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포도는 계절 관세를 적용했다.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상품들은 DDA 협상 종료 후 재논의하기로 했고, 홍어, 정어리 등 한국 어업에 민감한 품목은 무관세화 목표 연도를 최대 10년으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한 시장 접근 양허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을 포함한 전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총 11,170개 품목 중 87.2%에 해당하는 9,740개 품목이 협정이행과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고, 96.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는 10년 이내에 제거하기로 하였다. 칠레는 전체 5,854개 품목 중 41.8%를 차지하는 2,450개 품목이 협정 후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96.5%에 해당하는 5,648개 품목은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을 보면 한국은 공산품, 임산물 및 수산물의 전 품목과 농산물의 70.3%인 1,007개 품목이 해당되고, 칠레는 공산품 4,664개, 농산품 687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이 10년 내에 자유화된다. 하지만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민감도에 따라 쿼터 물량 제공, 특혜관세 부과, 관세 철폐 이행기간 부여, 자유화 일정 예외 설정 등을 적용했다.

농산물의 경우 칠레는 쇠고기 및 쌀 관련 일부 품목만을 10년 후 관세 제거 대상으로 하였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즉시 관세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품목인 쌀, 사과, 배를 관세 자유화에서 제외하였고, 칠레산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쇠고기 (400톤), 닭고기 (2,000톤; 냉동·조제저장) 등 모두 18개의 품목은 일정 수입량을 무관세로 하면서 제한량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한 관세제거를 도하게 할 아젠다 협상 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경우 한국은 전기동(電氣銅)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고, 칠레는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 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내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내 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 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은 5년 거치 후 13년 내 철폐 (8년 균등 인하)로 분류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 1〉 우리나라 양허안 개요

(우리나라 HS 10단위 기준, %)

양허 카테고리	전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품목 (농산물)
즉시철폐	9,740 (87.2)	9,101 (99.9)	224 (15.6)	138 (58.2)	277 (69.5)	배합사료, 종우, 양모, 커피
5년내 철폐	701 (6.3)	-	545 (38.1)	70 (29.5)	86 (21.5)	고사리, 장미, 두부, 포도주, 아몬드
7년내 철폐	41(0.4)	1(0.01)	40(2.8)	-	-	과일주스, 과일조제품, 가금류고기, 수프, 감자
9년내 철폐	1(0.01)	-	1(0.07)	-	-	기타과일주스
10년내 철폐	262(2.3)	-	197(13.8)	29(12.3)	36(9.0)	토마토, 돼지고기, 오이, 키위
계절관세 ¹⁾	1(0.01)	-	1(0.07)	-	-	포도
16년내 철폐 ²⁾	12(0.1)	-	12(0.8)	-	-	조제분유, 혼합주스
관세할당/DDA 이후 논의	18(0.15)	-	18(1.26)	-	-	쇠고기, 닭고기, 맨드린
DDA 이후 논의	373(3.3)	-	373(26.0)	-	-	마늘, 양파, 고추, 낙농제품
제 외	21(0.2)	-	21(1.5)	-	-	쌀, 사과, 배
합 계	11,170	9,102	1,432	237	399	

자료: 외교통상부

주: 1)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철폐(10년 균등)

2) 5년 후 협상 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내 관세철폐

이러한 시장접근 이외에도 양국은 무역규범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구하기로 합의해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유명 상표의 지적 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양국 투자자의 상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였고, 설립 후 단계의 최혜국 대우, 이행의무 금지, 분쟁해결절차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의 보호를 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투자를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정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채권과 은행, 보험 회사,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협정이 발효된 4년 후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도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표 2〉 칠레 양허안 개요

(칠레 HS 8단위 기준, %)

양허 카테고리	전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품목
즉시 철폐	2,450 (41.8)	1,478 (30.6)	677 (92.9)	96 (100)	199 (99)	TV,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5년내 철폐	1,994 (34.1)	1,992 (41.3)		-	2(1.0)	폴리에틸렌, 수송용 차량
7년내 철폐	14(0.2)	14(0.3)		-	-	유류여과지
10년내 철폐	1,190 (20.3)	1,180 (24.4)	10 (1.4)	-	-	축전지, 청소기
5년거치 8년내 철폐 ¹⁾	152(2.6)	152(3.1)		-	-	철강, 섬유 및 의류
예 외	54(1.0)	12(0.2)	42(5.8)	-	-	세탁기, 냉장고
합 계	5,854	4,828	729	96	201	

자료 : 외교통상부

주: 품목 분류, HS code 변경 등으로 품목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협정 발효 6년부터 13년까지 균등 철폐됨.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 협정 제 5, 6장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상품이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만, 만일 제 3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경우,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곳을 원산지로 인정했다. 이 때 ‘실질적인 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적으로 하며,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공정 기준 등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세관당국이 수출국에 원산지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생산자의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관련 기록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산지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원산지 규정 준수를 입증할 때까지 특혜관세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도 마련하였는데 한-칠레 FTA 및 WTO 협정의 공동 해당 사안인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TC)를 설치하고, 협정이행과 관련한 행정·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 사이의 협의, 자유무역위원회의 주선, 화해 및 중개, 패널 설치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패널은 당사국들이 패널위원 후보 명단을 작성하고 패널 설치 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명부에 기재된 패널위원 후보 중에서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면 패널은 사실 확인 및 피제소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분쟁해결 권고안을 작성하고, 또한 최초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의견을 수렴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한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에 따른 피해상당액의 보복조치를 제소국이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외통부, KIEP, 2003).

이러한 내용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역사상 최초로 경제통합 협정을 성공시키게 되었고, 아시아 국가로써는 처음으로 남미권과의 FTA 체결에 성공하여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이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쌀, 사과, 배 등을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를 확보하였고, 우리의 대외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칠레도 아시아국가와는 최초로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아시아 지역으로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4년여가 지난 현재 수출은 연평균 61.7%, 수입은 35.7%, 그리고 교역량은 43.8% 증가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칠레에서 2007년 시장 점유율 29.3%를 기록하여 25.2%를 기록한 일본을 제치고 수입차 시장에서 1위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대칠레 무역 수지의 75%를 차지하는 동(銅)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발효 1년 후 -10억 9500만 달러, 발효 2년 후 -13억 3500만 달러, 발효 3년 후 -22억 7100만 달러 등으로 적자 폭을 키워오다가 4년차에 동 관련 제품 수입이 늘지 않으면서 무역수지가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칠레가 2005년 중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칠레시장 내에서 중국산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탁기와 통신케이블, 진공청소기, 밸브, 플라스틱제품, 폴리에스테르직물 등 다수의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2 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는 인구가 484만 명, 면적이 707.1km²로 서울(605.5km²)보다 약간 큰 소규모 도시형 국가지만, 2007년 GDP(PPP 기준)가 2,283억 달러, 1인당 GDP (PPP 기준)는 49,754달러에 이르는 경제 강국이다. 또한 세계 2위의 무역항, 세계 4대의 외환시장, 세계 5대의 국제금융센터, 세계 3대 석유화학센터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현재 6,000여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다.

싱가포르는 2000년 9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 호주, 미국, 요르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2005년 6월에는 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와의 4국간 FTA 협상을 타결하고, 캐나다, 인도, 멕시코, 카타르, 바레인, 이집트, 페루, 파나마, 스리랑카, 쿠웨이트 등과도 FTA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다.

우리나라와는 1999년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담 때 고축통 총리가 한국-싱가포르-칠레 간 FTA를 제의한 이래 2002년 10월 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싱 FTA 산·학·관 공동연구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03년 서울과 싱가포르를 오가면서 3차례 공동연구회 회의를 하였고, 그 해 10월 23일 싱가포르 국민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 때 정부 간 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 FTA를 위한 본격적 행보가 시작되었다. 2004년 초 협상을 개시한 후 5차례의 협상과 2차례 실무회의, 3차례의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2004년 11월 29일 ASEAN+3 정상회의에서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05년 8월 4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문을 서울에서 정식으로 서명하였고, 그 해 12월 1일 한-싱가포르 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렇게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품무역에 있어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공산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를 최대 10년 내 철폐하고,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품목을 제외하여 다수 보수적으로 양허하였다.

〈표 3〉 우리나라의 상품 양허안 개요

(우리나라 HS 10단위 기준, %)

구 분	품목수 (비율)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 철폐	6,724 (59.7)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선박, 섬유류 등	제분용 밀, 사탕무·수수, 팜유 등	연어, 홍합, 냉동 해조류 등	석재류, 원목, 단판 등
5년내 철폐	2,009 (17.8)	석유아스팔트, 글리세롤 등 유기화학품, 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곡류가공품, 커피, 초콜릿 등	염장품, 통조림 등	대바구니, 부챗살 등
10년내 철폐	1,582 (14.1)	염화수소, 염화암모늄, 포름산 등의 유기화학품, 전동기 등	살구, 딸기, 콩, 감자, 무, 인삼, 주류 등	고등어·대 구등 일부 냉동품, 취치포 등	제재목, 성형목재, 파레트 등
양허 제외	946 (8.4)	휘발유 등 석유제품, 볼베어링, TV 수신기 등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쇠고기 등	양식용 활어 및 패류, 열대관상 어 등	합판, 섬유관 등
계	11,261 (100)	-	-	-	-

자료: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a), p.50

원산지 기준은 우회수입 방지 및 양국 간 교역 활성화,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는데, 우회수입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세번(稅番) 변경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창출될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의 양허안을 보면 양국 서비스 공급자 및 투자자에게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를 약속하였는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권리를 부여하고 양국 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으며, 비구속적인 수량제한(QR) 조항을 두고 있는 한·칠레 FTA와는 달리 구속적인 시장접근(MA) 조항을 포함하였다**.

*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대체로 50% (공제법 기준) 수준에서 타결하여 한·칠레 FTA에서의 45%보다 강화하였다.

** 비구속적 수량제한이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양적 제한조치(서비스 공급자수 제한, 총매출제한

또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상대국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와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의 무부과를 금지하였으며, 방위산업, 방송, 전력, 가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를 개방하였다.

우리나라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회계사, 변리사 등의 서비스와 스크린쿼터, 외국인 토지취득 등을 제한하고, 방송·전력·우편·도박·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제외한 기존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범위 내에서 양허하였다.

그 외 북한의 개성공단 또는 한반도 여타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부속서에 기재된 품목(HS 6단위 4,625개)에 대하여도 특혜관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로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경우 양자 간 긴급수입제한제도 (safeguard 조치) 발동을 허용함으로써 수입증가에 대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일부 정부조달 부문의 추가 개방, 기술사 출신대학 인정범위도 확대하였다 (외통부, KIEP, 2005a).

〈표 4〉 한·싱 양국의 서비스·투자 양허안 개요

	현행유보(Annex 9A) ¹⁾	미래유보(Annex 9B) ²⁾
우리나라 (총 81건)	회계, 세무, 변리사, 약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스크린 쿼터, 운송서비스에 대한 제한, 기본통신 사업 지분제한, 지방정부조치 등 50건	비거주자에 대한 자본거래 제한,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방송, 전력, 우편, 도박, 법률,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등 31건
싱가포르 (총 64건)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제한 등 34건	법률, 방송, 도박, 신문 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

- 주: 1. 현행유보(Annex 9A)는 서비스협정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현존 정부 조치를 의미하며 장래에는 현존하는 것보다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
 2. 미래유보(Annex 9B)는 서비스협정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

이렇게 싱가포르와 FTA가 체결됨으로써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고,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FTA상의 특혜

등)에 대해 철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단지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반해, 구속적인 시장접근이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제한조치에 대해 유보된 조치를 제외하고는 철폐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관세 부여 규정을 마련하는 선례를 구축함으로써 향 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싱 FTA체결 후 양국 간 교역량은 발효 전 134억불에서 발효 2년차에 203억불로 51.2%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는 23억불에서 58억불로 151% 증가하였다. 수출 부문에서는 선박 (500.3%), 중유 (834.8%), 기타석유화학제품 (189.7%)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장비 (380.7%), 컴퓨터(96.3%), 전산기록매체(73.4%) 부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우리 제품 점유율은 2005년 4.3%에서 2007년에는 4.9%로 증가하였다.

3.3 한·EFTA FTA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현재 회원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인구는 1천 2백 7십만 명, 1인당 평균 GDP (2007년 구매력 기준)는 58,714 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의 부국들 연합체이고, 오일·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EFTA간에 FTA 체결은 2004년 5월 14일 OECD각료회의의 한·EFTA 통상장관회담 때 한·EFTA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를 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해 8월과 10월에 제네바와 서울에서 한·EFTA FTA 공동연구 제 1, 2차 회의가 개최된 후 공청회를 거쳐 2005년 1월 한·EFTA FTA 제1차 협상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후 한국과 EFTA 간 4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5년 12월 15일에 정식으로 서명되었고, 2006년 6월 30일 국회비준 동의안이 통과함으로 2006년 9월 1일부로 한국과 EFTA간에 FTA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양국 간에 체결된 FTA 내용을 보면 전체협정은 FTA 본협정, 투자협정, 농업협정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협정은 총 10장 (부속서 13개)으로 구성되어 상품 및 서비스 이외에도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지적권, 경쟁분야에서의 협정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상품분야에서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간에 걸쳐 철폐하고, 그 중

* EFTA측의 내부사정으로 「투자협정」은 우리와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간에 체결되었고, 「농업협정」은 우리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개별 양자 협정으로 체결되었다.

86.3%의 상품은 협정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공산품 부문에서는 총 9,404개의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하여 100%양허하였으며, 91.1%의 상품은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다. 대신 섬유관 등 목재, 보일러, 유기·무기화학제품, 차량부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하여는 7년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였고, 농산물 및 수산물 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EFTA측은 우리의 전 품목 (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의류, 귀금속, 각종 조제식품에 대한 EFTA 측의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나 한·EFTA FTA를 계기로 모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비용이 총비용 대비 60% 이상인 경우, 국내산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농산물은 EFTA 측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양자협상으로 상호 민감품목을 인정하면서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했는데, 우리나라는 총 1,451개 농산물 중 스위스 34%, 노르웨이 46%, 아이슬란드 58% 품목을 양허 하였고, EFTA측은 우리 농산물에 대해 스위스가 51%, 노르웨이가 61%, 아이슬란드가 67% 양허 하였다. 품목별로는 EFTA측이 우리의 관심품목인 김치, 소주, 쌀발효주, 라면, 사과, 배 등을 양허했고, 우리측은 민감 품목 중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하되 치즈, 포도주, 양고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산물의 경우 EFTA측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측은 전체 406개 품목 중 88.4%에 해당하는 359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되 냉동고등어 같은 민감품목은 쿼터를 설정하고, 김, 미역 등 해조류는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제출한 제 2차 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분야를 규정하였는데, 우리측은 DDA 2차 양허안에 빌딩 청소업, 경영 컨설팅, 기술분석 서비스 3개 분야를 추가하여 EFTA측에 양허하였고, EFTA 측도 우리가 요청한 미용 및 세탁 서비스, 전문직 계약 서비스 공급자 양허 범위 확대, 보안컨설팅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했다.

투자협정 분야에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싱가포르 FTA 수준으로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되, 자유화 대상 중 방위산업, 토지 취득, 공기업 투자, 농림축산업, 항공산업, 전력, 가스, 원자력 산업, 금융서비스 등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시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5〉 우리나라의 상품양허 총괄표

구 분	전품목 (기본농산물제외)	공산품 (임산물 포함)	수산물	가공농산물
즉시 철폐	8,726 (86.3%)	8,568 (91.1%)	110 (27.1%)	48 (15.8%)
3년~7년 철폐	921 (9.1%)	807 (8.6%)	114 (28.1%)	-
10년 철폐	123 (1.2%)	-	102 (25.1%)	21 (6.9%)
관세인하 (10-50%)	187 (1.9%)	-	-	187 (61.5%)
쿼터할당 (TRQ)	1 (0.0%)	-	1 (0.2%)	-
향후 재검토	61 (0.6%)	29 (0.3%)	32 (7.9%)	-
양허 계	10,019 (99.1%)	9,404 (100%)	359 (88.4%)	256 (84.2%)
양허 제외	95 (0.9%)	-	47 (11.6%)	48 (15.8%)
총 계	10,114 (100%)	9,404 (100%)	406 (100%)	304 (100%)

자료: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2005b), p.53.

그 외에도 경쟁분야에서는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쟁적 기업 활동을 축소하기위해 상호 노력하고, 정부조달은 DDA차원 또는 제 3국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부여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등한 대우를 위한 협상을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는 WTO 지재권협정(TRIPS) 이상의 보호수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외통부, KIEP, 2005b).

이러한 한·EFTA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은 유럽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EU시장과 사실상 동일경제권인 EFTA에 진출하게 됨으로 EU와 FTA협상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FTA에 반영하여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며, 금융 및 해운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EFTA로 부터 선진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EFTA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상품 중에서도 의류, 자동차, 선박, 가축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사과, 배, 김치, 민속주, 라면 등 우리 농산물이 EFTA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했을 때 EFTA와의 FTA로 우리나라 GDP는 단기적으로 0.02%, 중기적으로 0.0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후생의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단기적으로 1억 7천 4백만 달러, 중기적으로 2억 4천 4백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대외정책연구원, 2004).

실제로 한·EFTA FTA체결 이 후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 보조기억장치, 무선수신기 및 전동축, 편직물, 기타 섬유제품 등의 수출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EFTA로부터의 수입은 선박용 부품, 배전 및 제어기 등 수출용 원자재를 중심으로 하여, 금, 의약품 및 시계 등의 품목이 53.7% 증가하였다. 그러나 EFTA 자체의 시장규모가 작고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가 되지 않으며, 선박 등 특정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수요 변화에 따라 전체 수출입의 부침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단기간의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4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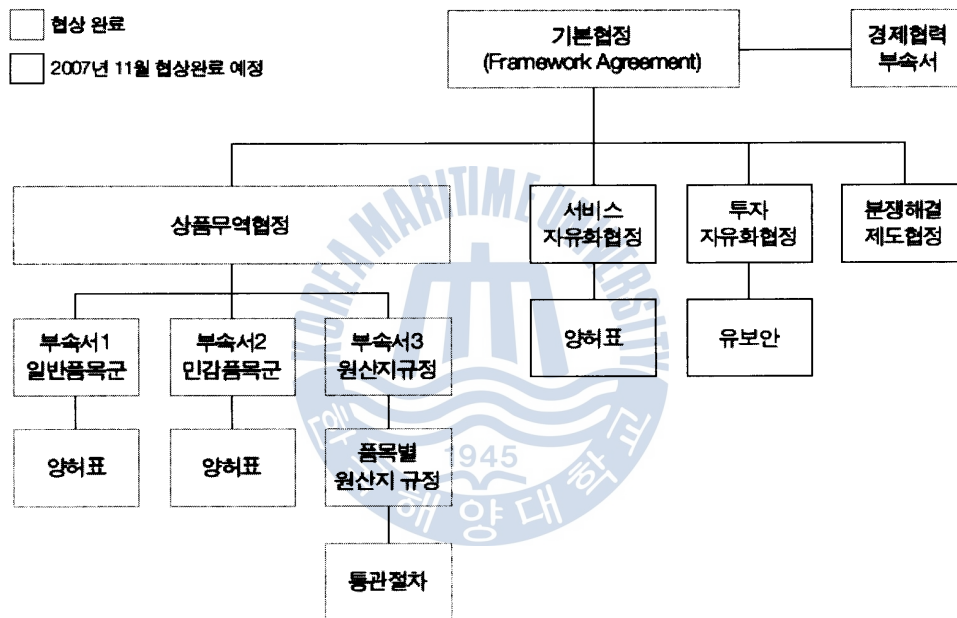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경제통합기구이다. 현재 총인구는 약 5억 7천 6백만 명, 총면적 약 447km²이지만, 1인당 GDP (2007년 구매력 기준)는 5,962 달러로 비교적 저소득국가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90년대에 연간 7~8%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고 2000년대 들어서도 5~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ASEAN+1 혹은 ASEAN+3 등과 같은 형태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2004년 11월 30일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를 채택하고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함으로써 FTA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5년 2월 23일 자카르타에서 제1차 협상이 개최된 후 2006년 4월 11차 협상에서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상이 타결되었고, 그 해 8월 24일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경제장관회담에서 한-ASEAN 상품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되었다. 2005년 12월 13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

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하였다. 그 후 2007년 4월에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모두 국회비준에서 동의를 얻고, 2007년 6월 1일 한-ASEAN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자국의 국내절차가 먼저 끝난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개국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국내절차가 끝나는 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2〉 한-ASEAN FTA 협정 구성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합의된 한·ASEAN FTA 협정문은 1) 기본협정, 2) 상품무역협정, 3) 서비스 협정, 4) 투자협정, 5) 분쟁해결제도 협정, 6) 기타 추후 협상될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협정에는 FTA의 포괄분야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및 분야별 협상 목표, 시한, 일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상품무역협정에서는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전체품목(HS 6단위 5,224개) 분류를 크게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나누고, 민감 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과 초민감품목군(Highly Sensitive Track)으로 나누었으며, 초민감품목군도 다시 5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각 품목군의 ‘크기’는 품목수와 당사국간 수입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각 품목군 별로 관세철폐·인하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어떠한 품목을 어느 품목군에 포함시키는지 하는 것은 각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모달리티(Modality) 방식을 채택했다. 이때 일반 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전체 관세 품목의 9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대국으로부터의 2004년도 총수입액의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은 전체 관세 품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그 발전정도를 감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에는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은 수입액 기준 없이 전체 관세품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수입액 기준으로 25%로 완화하였다. 일반민감품목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 6-7%, 수입액 기준으로 7%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고, 초민감품목은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품목 수는 HS 6단위로 200개 또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 모든 관세품목 수의 3%로 제한하며 상대국(혹은 지역)으로부터는 총수입액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표 6〉 한국 및 ASEAN 6개 국가 상품자유화 방식

구 분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HS 10단위 3% 이하)
수입액기준	90% 이상	7%	3% 이하
자유화 목표	2010년까지 완전 관세철폐 * 단, ASEAN 6개 회원국에게는 5% 범위에서 2012년까지 관세철폐	2012년까지 20%로, 2016년까지 0~5%로 관세감축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한 보호 인정 (i) 관세율 상한 50% 설정 (ii) 20%만큼 관세감축 (iii) 50%만큼 관세감축 (iv) TRQ 설정 (v) 양허제외 (40개)

자료: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2007), p. 44.

주: 한국은 협정발효 즉시 일반품목군의 70%, 2008년까지 일반품목군의 95% 이상 관세철폐, ASEAN 6는 2009년까지 일반품목군의 90% 이상 관세철폐

그리고 관세인하 및 철폐 방식은 품목별로 다른데 일반품목군의 경우 관세인

* 그러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 품목수의 30% 제한만이 적용된다.

하는 참여국의 발전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발전 정도가 높은 한국과 ASEAN 6(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를 완료하도록 하였고, CLMV 국가 중 상대적으로 발전정도가 높은 베트남은 2016년까지, 그리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2018년까지 일반 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민감품목 중 초민감품목은 5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50%의 관세율 상한을 가진 그룹 A,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최저 20%를 삭감하는 그룹 B,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최저 50%를 삭감하는 그룹 C, 관세할당을 부과하는 그룹 D, 관세 인하나 철폐에서 제외되는 그룹 E 등이다. 그룹 E에 포함된 품목은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HS 6단위로 최대 40개 관세품목을 분류할 수 있다. (외통부, KIEP, 2007, pp.43-50)

〈표 7〉 CLMV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

구 분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최종단위 3% 이하
수입액기준	베트남 : 75% 이상 CLM : 불설정	불설정	불설정
주요 내용	한국 및 ASEAN 6개국 적용내용과 동일		
이행시한	베트남 : 2016년 원칙 CLM : 2018년 원칙	베트남 : 2021년 CLM : 2024년	

자료: 외교통상부

주 : 베트남은 2015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7년까지 일반품목군의 90% 이상 관세철폐

분쟁해결제도 협정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에서는 한·

* 한국의 경우 2004년 기준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17%인 상품의 경우 2006년 1월 1일까지 15% 인하하고, 2007년 1월 1일까지 10%, 2008년 1월 1일까지 8%, 2009년 1월 1일까지 5%, 2010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완전 철폐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008년 2월 1일까지 일반품목의 95%를, 그리고 2010년 1월 1일까지 모든 일반품목군에 속한 상품의 최소 70%에 해당하는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ASEAN 6개국의 경우에도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50%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속하는 상품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ASEAN FTA를 구성하는 모든 법적 문서와 관련된 분쟁은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였다. 분쟁해결은 먼저 당사국간의 협의를 거치고 중재패널을 설치하는 순서로 하며,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 3자에 의한 주선, 화해 및 중재 절차를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분쟁사안에 대한 협의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3인의 패널위원으로 중재패널을 구성하고, 중재패널은 패널 구성 뒤 90일 이내에 잠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잠정보고서 제출 30일 경과 이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에 따른 중재 패널의 권고를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당사국에 대해 한·ASEAN FTA에 따른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에 관련된 사항은 성격상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FTA 특혜관세 부여로 산업피해 발생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허용했는데, 품목별로 관세철폐, 감축계획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7년까지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비스 자유화, 투자 자유화 협정 부문은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협상 중이다.

이러한 ASEAN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개별국가와의 FTA와는 달리 거대경제통합체와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SEAN은 6억에 가까운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며,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 위기에서 회복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시점에서 한·ASEAN FTA는 ASEAN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품협상에서 전품목이 아닌 ASEAN 회원 국가별로 HS 6단위로 100개 품목에 대한 부분적인 원산지 인정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았었지만, 싱가포르나 EFTA와는 달리 개도국으로 구성된 ASEAN 국가의 주력 품목들이 개

* 당초 ASEAN국가들은 개성공단 상품이 값싼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어우러져 자신들은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해당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변동이 있을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해 주고, 매년 개성공단 품목의 수출입 동향을 파악해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매년 검토 (Annual Review)'조항을 도입키로 합의 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ASEAN에 수출물량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설득했다.

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가 최종 타결됨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 연합(9개국) 회원국들은 오는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 및 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해 5,000여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게 됐다. 또한 나머지 7%는 오는 2016년까지 관세를 0~5%로 내리고, 최종 3%의 품목은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나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전의 싱가포르와 EFTA 등은 이미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로 관세율이 1~3%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아세안 국가들의 대부분은 10~30%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 철폐가 이전의 FTA 체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 과일 등 민감한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했고, 민감 정도가 높은 다른 농산물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현행 관세의 20% 수준을 감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3.5 한·미 FTA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고 국가 GDP(2007년 구매력 기준)가 14조 3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수입시장 규모(2007년 기준)도 1조 9,500억 달러로 일본, 중국, ASEAN 3개 국가의 수입시장 규모를 합한 것과 맞먹고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이다. 또한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금융, 물류, 유통,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정보 지식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FTA는 1984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윌리엄 브룩 3세가 비공식적으로 FTA를 타진했던 것이 시초였지만 사실 그 후 2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4년 5월 USTR 부대표가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을 다시 표명하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5년 2월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구체화 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경제권 사이에서 밀려나지

* 실제 관세율이 20%를 넘어 품목 비율이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하지만 말레이시아는 15.1%, 베트남은 31.3%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철강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ASEAN 회원국은 섬유 등 경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었다.

않고 동북아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미국이라는 역외의 거대 경제와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미국도 동북아 경제통합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를 해야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 통합에 연결고리를 만들기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편한 상대였다. 이에 2005년 9월 미 행정부는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2006년 6월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이 워싱턴에서 개최되면서 협상이 본격화 되었다. 그리고 2007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친 공식협상과 고위급 협상,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2007년 4월에 이르러서 한-미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는데, 쌀, 쇠고기,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방송, 통신, 개성공단 등 8개 분야가 협상 막판까지 타결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다.

〈표 8〉 주요 농산물 관상품목의 양허유형 구분

양허유형	주요품목
양허제외	쌀
현행관세,수입쿼타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포도(성출하기 17년, 비출하기 5년), 스낵용 감자(출하기 7년 유예 후 8년, 비출하기 즉시철폐)
장기철폐,세번분리	사과(후지 20년, 기타 10년), 배(동양배 20년, 기타 10년)
장기철폐,세이프가드	쇠고기(15년), 돼지고기(냉장 2개, 10년), 고추·마늘·양파(15년) 인삼(18년), 보리(15년), 맥주맥·맥아(15년), 전분(10년~15년)
15년	호두(미탈각), 밤,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자두
6~9년	신선 딸기(9년), 맥주·아이스크림·살구·팝콘용옥수수·아이스크림(7년), 돼지고기(2014.1.1철폐), 호두(탈각)·옥수수유(6년)
5년 이내	완두콩·감자(냉동)·토마토주스·오렌지주스·위스키·브랜디(5년), 해조류(3년) 아보카도·레몬(2년)
즉시철폐	오렌지 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자료: 외교통상부

* 괄호안의 숫자는 관세철폐기간

마지막으로 합의된 한-미 FTA의 협정내용을 보면 농산물 부문에 쌀을 포함

하여 전체 품목의 10% 이상이 예외적 취급을 받거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수입액 기준 25% 이상)하였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대신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양측 모두 품목기준으로 100% 양허하고, 수입액기준으로는 94% 내외에서 조기(3년 내)에 철폐를 통해 양국 간 관세장벽을 거의 해소했다. 특히, LCD 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칼라 TV 등의 품목은 관세 조기철폐로 대미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도 즉시 철폐하기로 하고 다른 승용차는 3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이 부문에 추가적인 이익이 예상된다. 대신 우리나라도 배기량 기준 현행 5단계 세제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특소세 발효 후 3년 내 관세를 5% 이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표 9〉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한 국 측	미 국 측
즉시	승용차(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 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 (6.5), 치약(8), 향수(8)등	DTV(5), 3,000cc 이상 승용차(2.5), 컬러TV(5), 골프용품(4.9), 샴푸(3.9) 등
5년	틀루엔(5), 골프채(8), 면도기(8), 살균제 (6.5),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페놀(5.5), 볼베어링(13), 콘택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 (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 (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이상	명태(30), 민어(63), 기타넙치(10), 고등어(10) 등	특수신발

자료: 외교통상부

()은 관세율

섬유부문도 미국은 수입액 기준 전체품목의 6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우리 주력품인 리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은 원사 기준 원산지 예외적용을 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문에서는 미국측이 요구하는 신약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고,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 시 특허 침해 여부 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진전될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경제 위기 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하는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통신부문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49%를 유지하고,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 투자에 현행 15%의 제한을 2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지적 재산권 부분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2년의 유예기간)하고, 정부의 귀책사유로 출원 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되었을 때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법정손해 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추진하고, 방송채널 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를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철폐하며, 외국방송 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는 정부의 규제 권한을 유보하며, 스크린쿼터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미 FTA가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 GDP가 6.0%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평균 0.6%씩 증가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보면 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대미 수출 증가는 133억 달러, 수입은 8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은 한·미 FTA 이행 후 10년간 총 34만 명의 취업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산업별로 농업취업자가 1만 명 감소하고 제조업은 7.9만 명, 서비스업은 26.7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농수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액이 10년 동안 연평균 최대 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아 한미 FTA로 인한 생산 증가액이 발효 15년간 연평균 2조 9,000억원에 육박한다. 대미수출은 관세인하로 15년간 연평균 11억 달러 늘어난다. 자동차 다음으로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산업 1조 2000억원, 섬유산업 4,800억원으로 생산증대효과가 크다. 그러나 철강 산업은 미국의 반덤핑 무역규제에 노출되어 생산증가액이 연평균 591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화학분야와 일반기계분야는 오

히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나빠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수산분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분야의 피해가 절대적으로, 총 6,698억원의 총 농업분야 피해 중 69%인 연 4,664억원의 생산 감소가 축산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중 쇠고기가 연간 1,811억원, 돼지고기가 연간 1,526억원, 닭고기가 707억원 생산이 감소한다. 제약업은 관세가 철폐되고,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10년간 연평균 904억원~1,688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개방 수준이 높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고,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향후 20년간 캐릭터 49억원, 출판 21억 6,000만원, 음반 등 5,000만원으로 연평균 71억 수준으로 추정했다. 금융과 법률분야는 이번 한·미 FTA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정책연구원 외 10개 연구원, 2007).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들과의 미국 시장 내 시장 점유율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및 대만 보다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게 되어 미국 시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습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안보리스크의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가 향상될 것이며, 외국인투자 증대 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감소되고, 해외차입이 활성화되면서 국내투자확대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FTA 체결로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하려 할 것이므로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FTA도 미국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존하고, 최근에 불어 닥친 세계적 금융위기와 더불어 미국에서 자동차부문에 협상내용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 오바마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양국에서의 국회비준 통과여부가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세계 여러 국가나 경제공동체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미 여러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현재 일본과 멕시코, EU, 캐나다, 인도, GCC 등과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뉴질랜드, MERCOSUR, 페루, 터키, 러시아와는 여건조성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FTA 체결의 타당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국가 간에 경제통합 추세에 부응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활동은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써 향 후에도 더욱 더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간, 지역간 경제통합 특히 경제통합의 가장 초기단계인 FTA 체결이다. 유럽연합은 현재 남미공동시장과 EU - 남미대륙간 자유무역협정(EU-MERCOSUR FTA)을 위해 논의 중이고, 2010년까지는 지중해 연안 12개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NAFTA도 북남미 34개국으로 구성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을 설립할 예정이고, 또한 EU와 NAFTA 연계(TAFTA)를 구상하고 있다.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싱가포르와 2001년 10월 12일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 협상을 거쳐 2002년 3월부터 FTA를 발효시켰고,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체결을 위한 고위급 실무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을 목표로 AFTA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남미에서는 MERCOSUR가 2005년 콜롬비아, 2007년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고, 향 후 남미 12개국들을 모두 포함하는 남미국가연합(UNASUL)을 창설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전방위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산업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와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그동안 지체되었던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체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최근의 세계 및 국가의 경제정책 추세 흐름에 맞춰 본 연구에서도 먼저 우리나라의 FTA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의 내용과 그 성과도 살펴보았다.

이제 미래에도 국제적으로 경제의 상호 의존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나라도 경제협력 없이 고립되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영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마저 빈약한 나라가 경제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해외시장 확보와 지속적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FTA 체결 국가 수만 늘일 것이 아니라 협정체결로 인한 부

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협정체결 당사국과 우리 산업간 상호보완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FTA를 체결할 때 국민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체결한 FTA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FTA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이나 홍보 없이 정부차원의 협상만을 진행시킨다면 국민의 반발로 인하여 FTA 추진이 번번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실제로 FTA 협상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세밀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로인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로 국민들이 반대시위를 위해 거리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시위국민들 중 일부는 FTA의 정확한 뜻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편향된 지식과 군중심리로 인해 참여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FTA 참여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국제사회에서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FTA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문적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 현재에는 정부 조직 내 FTA 정책국과 FTA 교섭국으로 나누어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FTA를 추진하고 홍보하려면 좀 더 확대되고 전문화된 조직 기구가 필요하다. 즉, 국제경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FTA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FTA에 대한 정부의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된 FTA 추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통상·협상 전문가도 동시에 양성해야 한다. 국제통상·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도의 전략도 겸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한 통상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육계(대학), 정부, 연구기관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통해 유능한 통상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쟁력이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미리 수립해 놓아

야 한다. FTA의 체결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늘 취약한 산업은 손실을 입게 되어있는 구조여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FTA를 맺는 대상국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산업과 집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농업부문이 대표적인 취약산업이므로 경쟁력이 없는 품종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장래성 있는 품종으로 중장기적 전환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무역자유화기금을 신설하고, 농가소득보조금 등을 확대하여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FTA를 체결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피해 보는 집단에 대해 그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보상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FTA를 추진함에 있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즉, 세계의 경제통합은 몇 몇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변국들과의 통합이 일반적이다. 이는 지리적인 근접성의 유익성 뿐 아니라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이러한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아마 우리나라 정부가 주변국들과 과거에 겪었던 불행한 역사로 인해 경제통합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맺은 FTA 형태로는 경제통합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당연히 떨어진다. 만일 한·중·일 3국간에 과거의 요인에 의하여 전 산업분야에 걸쳐 경제협력이 단기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면 우선 부문별 특혜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어느 특정산업을 통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이미 유럽연합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NAFTA의 'Auto Pact' 및 AFTA의 자동차산업 상호보완협정의 성공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동북아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된다면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의 여건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FTA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근본적인 전략을 수정하여 현재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확대된 FTA 협상보다는 좀 더 주변국으로 범위를 좁혀 FTA 체결 가능성을 타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수중 (2007), FTA 후 한국, 콜로세움.
-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2008), 한-칠레 FTA 발효 4년 수출입 동향분석
- 기획재정부 (2008), 한·미 FTA 산업별 보완대책 안내
- 김봉철 (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 김세영, 신상식 (2003),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도서출판 두남.
- 김정숙 (2007), 한·미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KOTRA (2005), 칠레-경제동향 및 전망
- KOTRA, (2005), 칠레-무역관계
- 노동부 (2008), 한·미 FTA에 따른 산업별 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대외정책연구원 (2004),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 대외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금융연구원 (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박변순, 전영제,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박종귀(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 박형찬 외 8명 (2004), FTA의 득과 실-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배기형 (1993),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 문음사.
- 외교통상부(2006), 한-EFTA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2007), 한-ASEAN FTA 주요 내용
- 외교통상부(2007), 한-EFTA FTA 발효 1주년 성과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2005a),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2005b), 한-EFTA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2007), 한-ASEAN FTA의 주요내용-기본협정, 분쟁 해결제도 협정, 상품무역 협정
- 이다원 (200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확대 효과 연구

- 이재기 (2005), FTA의 이해, 한울출판사.
- 이재기 (2007), FTA의 경제학, 청목출판사.
- 이정숙 (200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 정인교 (1988), 미국 FTA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이경희 (20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
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Asian Development Bank (2005),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
Progress, Prospects, Challenges, ADB
- Hiratsuka, Daisuke and Fukunari Kimura (2008), *East Asia's Economic Integration :
Progress and Benefit*, IDE-JETRO.
- Kim, Young-Han (2007), "Regional Integration from a Korean Perspective," in
Fujita Masahisa e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 From the Viewpoint
of Spatial Economics*, IDE-JETRO, pp.118-136.
- Plummer, Michael G and Erick Jones (2006),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Asia*, World Scientific.
- Shigeyuki ABE and Bhanupong Nidhipraba (2008), *East Asian Economies and New
Regionalism*, Kyoto University Press.
- Thakur, Anil Kumar and Adesh Sharma (2008), *Asian Economic Integration*, Deep
& Deep Publications PVT. LTD.

참조 사이트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http://www.aseansec.org>)
- 미 무역 대표부 홈페이지(www.ustr.gov)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